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63

## 동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이홍민	장후원	이수준	박종필		
백종재	김성민	박신환	이주연	김영진	

동아보건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2018 학년도 제 63 차)

1. 일시 : 2018 년 7월 11일 14:00

2. 장소 : 전남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  
112호 소회의실

회의소집통보일자	2018. 7. 4.
위원정수 : 11명	재적위원 : 11명

3. 출석위원(9명) : 이홍열, 박종필, 강후원, 박준범,  
백홍규, 안도언, 박선화, 조영진, 이규연

4. 결석위원(2명) : 조선우, 김 철

5. 회의 안건

- 1) 학칙 개정(안) 심의
- 2) 대학 평의위원회 규정 개정

6. 회의내용

(의장: 이홍열) 평의원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함.

제1안 동아보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안도언 교무과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교학처 안도언 교무과장) 동아보건대학교 학칙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학칙 전면개정과 주요 개정 사항들에 대해 설명함.

(참석의원 전원 : 의견 교환 및 검토를 함.)

(의원: 박준범) 안도언 교무과장의 설명과 배부해 주신 학칙에 대해 검토 한 바 이의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의장: 이홍열) 다른 의견이 없는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 찬성하여 학칙 전면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제2안 대학 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건으로 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배부하고 평의원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함.

(참석의원 전원 : 의견 교환 및 검토를 함.)

(의원: 백홍규) 동아보건대학교의 구조개혁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평의원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이홍열	강후원	박준범	박종필	
백홍규	안도언	박선화	이규연	김철우

(의장: 이홍열) 다른 의견이 없는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 찬성하여 동아보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기타 협의 사항에 대해 물었으며, 전원 없으므로 폐회를 선언함.

(폐회시간 : 2018년 07월 11일 16:00)

의장	이 홍 열	( 이 홍 열 )	의원	백 홍 규	( 백 홍 규 )
의원	박 종 필	( 박 종 필 )	의원	안 도 언	( 안 도 언 )
의원	강 후 원	( 강 후 원 )	의원	박 선 화	( 박 선 화 )
의원	박 준 범	( 박 준 범 )	의원	조 영 진	( 조 영 진 )
			의원	이 규 연	( 이 규 연 )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u>대학평의원회 규정</u></p>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구성)① 평의원회는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평의원은 본 대학교 <u>교수협의회</u>에서 <u>5년</u>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u>각 직급별로 안배하여</u> 선출한다.</li> <li>2. 직원평의원은 본 대학교 <u>직원협의회</u>에서 <u>5년</u>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u>직급별로 안배하여</u> 선출한다.</li> <li>3. 학생평의원은 <u>학생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한다.</u>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u>대의원회에서 평의원을 선출하여 평의원에 통보한다.</u></li> <li>4. 생략</li> </ol>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대학평의원회 규정</u></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구성)① 평의원회는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평의원은 본 대학교에 <u>3년</u>이상 근무한 교원을 대상으로 <u>교수협의회</u>에서 선출한다.</li> <li>2. 직원평의원은 본 대학교에 <u>3년</u>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u>직원협의회</u>에서 선출한다.</li> <li>3. 학생평의원은 <u>총학생회장과 학생회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한다.</u>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 <u>대의원 의장과 대의원에서 선출한 1인으로 한다.</u></li> <li>4. 현행과 같음.</li> </ol>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2조~제10조 생략	제2조~제10조 현행과 같음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u>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